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160924			
최초 등록일	2016.09.19	최종 등록일	2026.01.27.	

강창구진순대

정보공개서

[(주)창구식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창구식품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845 번길 56

대표번호	1899-6696	팩스번호	031-558-0220
가맹사업부서	가맹사업본부	담당전화번호	1899-6696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내·외국 기업 여부
4. 인수·합병 여부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의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8.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의 연혁
3.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4.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영업 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10. 직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3. 신용 제공 등 내역
4.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5. 영업지역
6.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8.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9.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0.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1.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2.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정 보 공 개 사 항

1. 당사의 일반현황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 ((주)창구식품의 “강창구진순대”)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강창구진순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주)창구식품	강창구진순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845 번길 56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0.08.30	2010.09.01	강창구	1899-6696	031-558-0220
	법인등록번호	284211-0058456	사업자등록번호	132-81-92335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내이사	강창구	강창구진순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845 번길 5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창구	1899-6696	031-558-022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감사	최나영	강창구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845 번길 56		

		순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강창구	1899-6696	031-558-0220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인수·합병 여부

당사의 정보공개서 직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흡수합병함	(주)창구에프앤씨	강창구참쌀진순대	2023.10.13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 1층(성수동 2가)	강창구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강창구진순대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로고
강창구 참쌀진순대	강창구진순대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6. 가맹본부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3,434,995	2,371,720	1,063,274	4,481,468	49,781	38,339
2023년	9,608,075	8,611,554	996,520	5,720,878	-450,266	-360,959
2024년	9,639,128	9,082,410	556,717	9,707,691	398,697	-24,193

나.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강창구	사내이사	2013.01.24 ~ 현재	(주)창구식품 대표	회사업무 총괄
			2022.09.29. ~ 2023.10.12	(주)창구에프앤씨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관련	최나영	감사	2013.01.24 ~ 현재	대표이사	회사업무 감사

8.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상근	비상근	10
	2	-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강창구진순대]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강창구진순대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건본이미지	권리 범위	출원 및 등록 일자	출원 및 등록 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사용기간)
상표권		가맹점 상 호로 사용	등록일자 2011.08.08	등록번호 4102147800 000	강창구	2031. 08.08 (2031. 08.08)

* 당사는 위의 지식재산권을 소유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강창구진순대의 가맹사업 시작일(직영점 개설일)은 2009년 06월 02일 입니다.

2. 강창구진순대의 연혁

당사의 강창구진순대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비고
강창구의참쌀진순대	강창구참쌀진순대	강창구	2009.06~2010.08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92	-
(주)창구식품	강창구참쌀진순대	강창구	2010.09~2012.12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04-8	운영권양수도
(주)창구식품	강창구참쌀진순대	강창구	2013.01~2013.1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845 번길 56	주소이전
(주)창구에프앤씨	강창구참쌀진순대	강창구	2013.10~2016.08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61(수택동, 세진빌딩 3층)	운영권양수도
(주)창구식품	강창구참쌀진순대	강창구	2016.08~2020.0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845 번길 56	운영권양수도
(주)창구에프앤씨	강창구참쌀진순대	강성구	2020.04.01~2022.09.28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 1층(성수동 2가)	운영권양수도
(주)창구에프앤씨	강창구참쌀진순대	강창구	2022.09.29~2023.10.12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 1층(성수동 2가)	대표변경
(주)창구식품	강창구참쌀진순대	강창구	2023.10.13~2026.01.2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845 번길 56	흡수합병
(주)창구식품	강창구진순대	강창구	2026.01.20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845 번길 56	영업표지변경

3. 강창구진순대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강창구진순대	한식	순대

4. 최근 3 개년도 말 강창구진순대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 직전 3 개 사업년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강창구진순대의 전국 및 광역지방 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28	28	-	32	32	-	47	46	1
서울	13	13	-	14	14	-	19	18	1
인천	1	1	-	1	1	-	1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1	1	-
경기	14	14	-	17	17	-	25	25	-
강원	-	-	-	-	-	-	1	1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베트남	-	-	-	-	-	-	-	-	-

베트남 매장은 합계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 최근 3 개 사업년도 말 강창구진순대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강창구진순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직전 3 년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 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년	23	6	1	-	-	28
2023 년	28	7	-	3	1	32
2024 년	32	20	-	6	-	46

베트남 매장은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6. 강창구진순대 외에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강창구진순대]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강창구진순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사업연도(2024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2024년 말 가맹 점수	2024년 연간 매출액 (단위:원, VAT 미포함, POS매출)						비고 산정수
		평균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46	718,762	15,425	4,128,558	43,458	132,517	4,214	37곳 산정
서울	18	579,959	16,296	1,890,695	31,294	156,656	5,483	17곳 산정
인천	1	-	-	-	-	-	-	5곳 미만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1	-	-	-	-	-	-	5곳 미만
경기	25	902,233	15,540	4,128,558	43,458	151,999	4,214	18곳 산정
강원	1	-	-	-	-	-	-	5곳 미만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베트남		산정에서 제외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의 POS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 영업기간이 6 개월이상 12 개월 미만인 가맹점은 12 개월로 환산하여 기재하였으며, 영업 개월이 6 개월 미만인 가맹점과 가맹점이 5 곳 미만은 가맹점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면적 3.3m²당 매출액은 각 가맹점이 알려진 면적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전용 면적당 매출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사업여부와 정도,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강창구진순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4 년	46	1,444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강창구진순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직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금액(천원)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56,126	 (비공개)	-	
광고 및 판촉		(비공개)	156,126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구리지점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105	031-562-5983

*귀하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기업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기업은행(개인상품부)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www.kbstar.com) 접속 → ③ (기업서비스)클릭 → ④ (SOHO센터)클	

	이용시	릭 → ⑤ (가맹금예치제도)클릭→ ⑥ (가맹점사업자)클릭 → ⑦ (가맹금 예치금 예치)클릭 → ⑧ 가맹금예치 완료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기업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를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별도로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강창구진순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역	일반매장	Take-out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금액	금액		
가맹비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3. 최초 가맹점 개점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11,000	5,500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5,500	2,2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역	일반매장	Take-out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금액	금액		
가맹비	1.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인력지원의 대가 2. 홍보지원비	5,500	3,300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정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양수 전 교육비	5,500	1,1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정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내역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5,000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보증금은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천원/VAT 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일반매장	Take-out	일반매장	Take-out
		21,500	12,700	14,900
가맹비	11,000	5,500	4,400	3,300
교육비	5,500	2,200	5,500	1,100
보증금	5,000(부가세해당없음)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강창구진순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단위:천원/VAT 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일반매장 (30평)	Take-out (7평)	30평/8평		
인테리어 설비	정보공개서 V-1의 거 래상대방	59,400	11,000	1,980/1,571	계약 체결 시 개별계약	설치 전 소요비 용 공제 후 반 환
간판 및 사인물		7,150	5,500			
설비 및 집기		30,800	11,000			미제공 시 소요 비용 공제 후 반환
초도물품		7,700	3,300			
합계	-	105,050	30,800	3,502/4,400	-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 ² 당 330(일반)/110(take-out)						

- * 인테리어 설비의 경우 특수상권 및 특수물일 경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 표의 3.3m²당 금액은 99m²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이며, 실제로는 면적에 비례하지 않거나 면적에 상관없이 비용이 같거나 적은 등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간판 및 사인물의 경우는 매장의 면적과는 상관이 없고 간판의 경우에는 외부 건물의 형태와 상태 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고 사인물의 종류, 수량, 질 등이 좌우하므로 면적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전기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마.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존 금액(단위:천원/부가세포함)		지급시기
예치 가맹금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계약금)	일반매장	Take-out	일반매장	Take-out	
	18,200	12,700	12,700	9,400	
계약금	기타 대금의 40%		-		계약 체결 시
중도금	기타 대금의 30%		-		공사시작후 10일전
잔금	기타 대금의 30%		-		초도입고 3일전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개점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사.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강창구진순대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아.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별첨1~4]**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개점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역	지급 대상자	금액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 조건
로열티 (일반매장)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 본부	-전월 POS 월매출 *5,000만원 미만 : 220,000원(매월) *5,000만원 이상 : 330,000원(매월)	익월 10일	후불로 반환 안됨
로열티 (Take-out)			220,000		
개점 이후 교육비	수시 교육	가맹 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특별 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 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 으로 실시될 경우 에 실비로 청구되 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 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 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 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 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 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 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 의 판촉비용의 부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 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로 시행되 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 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간판 및 인테리어 시공 비용	계약자	가맹본부 분담 부분 제 외 나머지 모두	개별청 구	발주 전 소요 비 용 공제 후 반환
지연 이자	비용의 지 급 지체에 따른 이자	가맹 본부	연 20%	개별 청구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여서 반환 안됨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기준: 2024 년)	내용(단위: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강창구진순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 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강창구진순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강창구진순대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강창구진순대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별첨 6 과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강창구진순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직전연도 수취한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강창구진순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98

2) 당사가 [강창구진순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강창구진순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제한 중 <상품명> 참조	왼쪽에 기재된 상품 및 승인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1 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 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별첨 5 와 같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반인에게 순대를 주재료로 하여 당사와 동일한 형태의 주메뉴를 판매하는 외식업	강창구진순대	-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를 원칙으로 하되, 첨부된 지도를 우선으로 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특수상권 및 특수물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업지역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意的인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강창구진순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대리점	다산에프앤씨(농협유통)	찰순대	별도제품
도매점	상대유통	진한순대국, 얼큰한순대국 강창구진순대국	별도제품

도매점	동양식자재마트	찰순대 진참쌀순대	별도제품
가맹본부	SN 인더스트리 (씨앗호떡)	찰순대 간 허파 염통	별도제품
도매점 (온라인유통)	지투지샵	진참쌀순대 진전통순대 찰순대 간 허파 염통 오소리감투 진한순대국 얼큰한순대국	별도제품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의 계열회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티몬 쿠팡 네이버 위메프 지마켓 11번가	www.tmon.co.kr www.coupang.com www.naver.com www.wemakeprice.com www.gmarket.co.kr www.11st.co.kr	진참쌀순대	중량/판매가상이
			진두부순대	중량/판매가상이
			진전통순대	별도제품
			찰순대	별도제품
			간	별도제품
			허파	별도제품
			염통	별도제품
			오소리감투	별도제품
			진한순대국	별도제품

			얼큰한순대국	별도제품	
			낭만순대국	별도제품	
			진순대양념장	중량/판매가상이	
			빼해장국	별도제품	
			양념곱창	동일제품/판매가상이	
			양념막창	동일제품/판매가상이	
			양념돼지껍데기	동일제품/판매가상이	
			진편육	동일제품/판매가상이	
			양념쭈꾸미	동일제품/판매가상이	
			추어탕	동일제품/판매가상이	
	배민전국별미		진전통순대	별도제품	
			진한순대국	별도제품	
			얼큰한순대국	별도제품	
	쿠팡 로켓프레시	www.coupang.com	진전통순대	별도제품	
			진두부순대	중량/판매가상이	
			진참쌀순대	중량/판매가상이	
			진한순대국	별도제품	
			얼큰한순대국	별도제품	
			낭만순대국	별도제품	
			빼해장국	별도제품	
			양념곱창	동일제품/판매가상이	
	마켓컬리		www.kurly.com	찰순대	별도제품
				진전통순대	별도제품
				강창구진순대국	별도제품
				매콤양념곱창	동일제품/판매가상이
				강창구순대만진순대국	별도제품
우아한형제들 비마트			양념오돌빼	동일제품/판매가상이	
			진전통순대	별도제품	
			진한순대국	별도제품	

			얼큰한순대국	별도제품
--	--	--	--------	------

사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4.11%	0.56%	0%	5.33%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37.50%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강창구진순대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다만, 갱신시에는 1 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단, 계약기간은 1년)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2 항 및 3 항 25 조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및 31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조 1 항 1 호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등 공급품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5 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 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 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조 1 항 및 2 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 조 2 항 ~4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 조 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9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 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 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27 조 2 항 및 3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부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 조 2~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1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5 조 21 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 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 조제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5)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가맹점의 설비, 가입비 등은 제외한 정보공개서상의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 경업금지 범위

경업금지 되는 업종
일반인에게 순대를 주재료로 하여 당사와 동일한 형태의 주메뉴를 판매하는 외식업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강창구진순대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 기존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해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을 1년간 영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강창구진순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상권에 따라 개별 협의	월 28일 이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수시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50%/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결정 →가맹점부 담액 통지 (광고1개월 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50%/가맹점사업자수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광고 및 판촉을 시행합니다. 다만,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 및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 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금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 제 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금오천만원(5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금오백만원(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금삼천만원(3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 일 금삼십만원(300,000 원)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제4항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한 위약금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5항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제6항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5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1899-6696).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정보공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 일 이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즉시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2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7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30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3 일	
교육	- 교육 - 점주 및 주방담당자 교육	4 일	
개점	개점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개점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D-day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분담비율 및 구제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점포환경개선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p>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p>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p>지급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p>비용 부담 제외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강창구진순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매장 ***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내용	소요 시간(h)	기한	비고
이론	조리부	• 주방식자재 보관방법 및 취급요령	2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홀	• 손님접대 방법 및 친절서비스 교육	2		
실습	조리부	• 취급메뉴 세팅 및 조리방법 • 주방기물 사용방법	14		
	홀	• 취급메뉴준비과정 및 서빙방법	3		
	조리부	• 육수 및 머리고기 조리방법 • 전메뉴 숙지여부 확인	8		
	홀	• 준비과정 숙지 및 주방과의 연관업무 처리방법 및 생산공장 현장 방문	3		

*** take-out 매장 ***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내용	소요 시간(h)	기한	비고
이론 및 실습	가맹 계약 당사자	• 주방식자재 보관방법 및 취급요령 • 손님접대 방법 및 친절서비스 교육 • 취급 메뉴 세팅 방법 • 서비스 마인드 배양 • 매출 증대 방법 등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교육	16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나. 개정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강창구진순대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협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개정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정 전 교육 (일반매장)	32시간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 개정 전 교육비는 교육실시 이전에 지급하여야 함.
개정 전 교육 (take-out매장)	16시간	2,200	
수시 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 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협의	

▶ 교육시간과 교육장소는 판매 메뉴, 영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필수), 주방 및 홀 담당자 1~2 인(협의)입니다. 3 인이상 교육을 원할 경우 인당 50 만원(부가세별도)의 추가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광장점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12, 1 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 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당사의 직영점은 영업기간이 6 개월 미만으로 매출액 산정을 생략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899-669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가맹점의 간판 및 사인물 내역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별첨 3-1. 일반가맹점의 설비 및 집기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3-2Take-out 가맹점의 설비 및 집기 내역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별첨 4. 일반가맹점의 원·부재료 내역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Take-out 가맹점의 원·부재료 내역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별첨 5. 강창구진순대 메뉴리스트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간 1kg/ea	3,112	변동 시 서면이 나 이메일, 문자, 카톡 기타 통신 수단으로 공지	2025년 04 월 기준
감자탕가루양념 490G/EA	9,065		
감자탕육수 5KG/EA	6,517		
강창구등심돈까스 8KG/BOX	77,322		
강창구진양념쭈꾸미 5KG/BOX	87,416		
강창구치즈돈까스 8KG/BOX	101,920		
국밥용슬라이스 2KG*6EA/BOX	112,608		
깍두기 15KG/BOX	40,217		
깍두기양념 3.34KG/EA	51,960		
돈 2 두(국내산)5KG*2EA/BOX	34,971		
돈등뼈 20KG/BOX	79,206		
돈목뼈(스페인산)20KG/BOX	71,932		
돈사골 20KG/BOX	38,338		
돼지소창 1KG*12EA/BOX(개당 발주)	10,613		
돼지염통 1KG*8EA/BOX(개당 발주)	5,223		
두부순대 2KG*6EA/BOX	77,792		
뼈해장국 9KG/BOX	42,935		
삼정참머리 2KG*5EA/BOX	114,340		
생채양념 1.07KG/EA	10,295		
양념오돌뼈 4KG/BOX	44,492		
양념우거지(우거지찜)2KG/EA	8,918		
허파 1KG*8EA/BOX(개당 발주)	3,263		
오소리감투 1KG*6EA/BOX(개당 발주)	17,150		
직화구이매콤양념곰창 4KG/BOX	48,412		
직화구이양념막창 4KG/BOX	78,596		
직화돼지껍데기 4KG/BOX	39,004		
진마라순대국양념 4KG/BOX	81,732		
진순대가루양념 4KG/EA	39,925		


진순대가브리살수육 10KG/BOX	150,332		
진순대돈골육수(국내산)5KG*2EA/BOX	16,601		
진순대돈골육수 C5KG*2EA/BOX	38,043		
진순대목전지수육 10KG/BOX	200,410		
진순대삼겹살수육 10KG/BOX	191,590		
진순대양념장 5KG/EA	44,678		
진순대전골양념 2KG/EA	21,991		
진순대조미돈골육수 5KG*2EA/BOX	18,336		
진순대철판양념장 2KG/EA	18,689		
진편육 300G/EA	3,524		
찰순대 2KG*6EA/BOX	47,745		
참쌀순대 2KG*6EA/BOX	75,793		
추어탕 500G/EA	3,118		
포장봉투(100 매/묶음)100 매/EA	14,700		
피순대 2KG*6EA/BOX	79,086		
해장국육수 5KG/EA	13,681		

※ 위 가격은 매장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vent 할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행사 등 가격할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당사와 가맹점주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당사의 상황에 따라 메뉴 및 가격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별첨 6.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p>경기도 Gyeonggi-do</p>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별첨 7 재무제표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령확인서(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주)창구식품』의 『강창구진순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	년	월	일
정보공개서 등 수령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수령자 주소:			
전화/휴대폰:			
(주)창구식품 대표자 :	서명(또는 기명날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 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 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분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